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범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417

발의연월일: 2020. 11. 17.

발 의 자:서범수·권명호·권영세

김희곤 · 박덕흠 · 윤한홍

윤희숙 • 전봉민 • 최춘식

최형두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그간 우리나라는 차량 소통 중심의 교통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차량 중심의 왜곡된 교통문화가 형성되었으며, 그로 인해 2019년 기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3,349명 중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39%로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임.

현행법은 보행자의 통행방법과 관련하여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도록 하고,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현실에서는 주택가 이면도로 등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되어 통행하고 있으며,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에서 오히려 보행자 보호에 미흡한 실정임

이에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 서는 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통행우선권을 확보하여 보행자를 보호하고, 이러한 도로에서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를 부여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8조제2항, 제8조제3항 및 안 제13조제7항 신설).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 본문 중 "도로에서는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. 다만, 도로의 통행방향이 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마를 마주보지 아니하고 통행할 수 있다"를 "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도로(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된 도로를 포함한다)에서는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 여야 한다"로 한다.

제8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(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 한정한다. 이하 같다)에서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. 이때 보행자는 고의로 차마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.

제13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 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,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 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정 혅 행 개 아 제8조(보행자의 통행) ① (현행과 제8조(보행자의 통행) ① (생 략) 같음) ②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 (2) -----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차 -----도로 중 중앙 마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가장 선이 있는 도로(일방통행인 경 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된 도로 통행하여야 한다. 다만, 도로의 를 포함한다)에서는 길가장자 통행방향이 일방통행인 경우에 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. 는 차마를 마주보지 아니하고 통행할 수 있다. <신 설> ③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 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 이 없는 도로(일방통행인 경우 에는 차선으로 구분되지 아니 한 도로에 한정한다. 이하 같 다)에서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. 이 때, 보행자 는 고의로 차마의 진행을 방해 해서는 아니 된다. ③ (생 략) 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 제13조(차마의 통행) ① ~ ⑥ 제13조(차마의 통행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 (생 략)

<신 설>

⑦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 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 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 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,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 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 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